

2020년 제4회 목포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

주무관	간사	부의장	의장		
이주현	변경석	안준식	2020.09.24. 이현종		

협	
조	

회의명	목포대학교 대학평의원회
회의주관부서	대학평의원회
개최일시 및 장소	2020. 09. 24.(목) 13:30, 본부 3층 대회의실
참석자명단	의원 16명중 13명 참석 -참석(13명): 이현종, 박민호, 변경석, 마승진, 소순열, 이창대, 김정화, 윤상국, 안준식, 정태균, 이치현, 홍창의, 최용희 -불참(3명): 허재영, 이현운, 이가림
회의진행순서	1. 개회 2. 경과보고 3. 회의안건 상정 및 심의 4. 폐회
상정안건	1. 목포대학교 학칙 전부개정안

발언요지

1. 개회	- 목포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성원(재적평의원 16명 중 13명 참석)
2. 경과보고	- 2020학년도 제3회 목포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낭독
3. 회의안건 상정 및 심의	- 의장(안건상정): 목포대학교 학칙 전부개정안 · 교무부처장: 목포대학교 학칙 전부개정에 관한 기본 설명 · 00위원: 제88조(졸업및학위)의 졸업조건에서 외국인 학생들의 기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 조건이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어 학과에 따라 악용할 수 있는 바 등급을 완화하는 등으로 변경하였으면 함 · 교무부처장: 현재 외국인 학생들에게 기존의 졸업조건에 한국어능력시험이 추가되어 있어 졸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 향후 글로벌학부 등 외국인 학생 대량 입학에 대비하고자 함 · 의장: 학칙 개정 후 하위 규정에 개정사항을 잘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적용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 교무처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· 00위원: 제26조(단과대학교수회)의 심의·의결사항에 학생 징계 사항을 추가하여 징계에 관한 사항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함 · 의장: 학생처 징계규정 개정시 징계업무처리의 기한을 반영하여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음 · 00위원: 제123조(학칙개정절차) 등 교수평의회와 교수회의 대의기구 등의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· 의장: 학칙 전반에 걸친 용어 정의를 차후 학칙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.

· 의장: 전 위원 기타 의견 없으므로 “원안가결” 하기로 의결함.

4. 폐회

결정사항 및 표결내용	
비 고	
붙 임	1. 등록부